변경 합 의 서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(이하 "IPS"이라 칭함)와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 분정로 397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, 중국 북경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 류재윤(이하 "컨설턴트")은 2016년 ___월 ___일("효력발생일")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고,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상호 확약한다.

----- 전 문 -----

"IPS"와 "컨설턴트"는 2015년 10월 3일 "IPS"가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컨설팅 계약서(이하 "원본 계약서")를 체결한 바 있으며, 당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2016년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한다.

----- 합의 사항 -----

- 1. 양 당사자는 "원본 계약서" 제2조(계약기간)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기간을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연장하는데 상호 합의한다.
- 2. 양 당사자는 "원본 계약서" 제5조(인센티브)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을 "IPS"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에 관한 사업 범위로 제한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.
- 3. 기타 본 합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은 "원본 계약서"의 규정에 따르며, 본 합의서와 "원 본 계약서"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.

위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,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 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경영지원본부장 하 윤 희



컨설턴트

성명: 류재윤 볼(인) 2~ 을